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공동기자회견 직후(19:00 예정)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044-203-5740), 김파라 사무관(044-203-5742)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실질 타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 정상회담('14.12.10)에서 공식 선언 -

□ '14.12.10(수)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함

○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베트남 부휘황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였음

□ 한-베트남 양국은 '14.12.8(월)~10(수)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제9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FTA정책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부휘손 무역진흥청장)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 이로써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금번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되었음

□ 한-베트남 FTA는 **우리 나라의 15번째 FTA**로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과의 FTA인 바,

○ 동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함**

【한-베트남 FTA의 의의】

1 한-베트남 FTA는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임**

○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對베트남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및 비중 순위('14.10월, 백만불, %) : ① 반도체(2,509, 12.9), ② 무선통신기기부품(1,526, 8.9), ③ 합성수지(985, 5.4), ④ 편직물(803, 4.4), ⑥열연강판(759, 2.6), ⑪자동차부품(261, 1.4) 등

○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증가,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대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함

2 한-베트남 FTA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로서,

○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

*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14.8월, %): (미국) 69.3, (EU) 77.8, (아세안) 33.0

3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겠음

○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경제성장률(%): ('11) 6.24 → ('12) 5.25 → ('13) 5.42 (베트남 통계청)

-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 가전(전기 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음

*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이미 개방

- 향후 **베트남 측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하여 추가적인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하는 기회를 보장받았음

- 또한,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하여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4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을 개선함**

○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되어, 관세 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음

< 한-베간 한-아세안 FTA 자유화 수준 >

구 분	일반품목*(품목수 90%)	민감품목(품목수 7%)	초민감품목(품목수 3%)
	관세 완전철폐	관세율 0~5%로 감축	관세율 일부 감축, 양허제외
한 국	완료	'16년까지 관세감축	'16년까지 관세율 일부 감축 등
베트남	'18년 완료	'21년까지 관세감축	'21년까지 관세율 일부 감축 등

※ 일반품목의 경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1.7%, 베트남은 수입액 기준 86.2%

○ 한-아세안 FTA 발효(상품협정 '07.6월 발효) 이후 일본과 베트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09.10월 발효)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의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게 되었음

○ 금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양허를 획득하여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받아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한-베 FTA, 일-베 EPA 자유화 수준 비교(수입액 기준) : (한-베) 94.7% - 92.2% / (일-베) 96.5% - 90.1%

5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한국은 일본에 이은 베트남 제2위 투자국**으로(건수 기준 1위), 약 3,3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 **수출자·생산자 사전심사 신청** 규정, 재심 및 불복 청구시 **기업 비밀 보장** 조항,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200불 이하) 등을 마련하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음

6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 및 음반 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하여 베트남 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동시에,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규정을 포함**하였음

【향후 계획】

□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며,

○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참고 1.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2. 한-베트남 FTA 타결 결과
3. 한-베트남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4. 한-베트남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5. 한-베트남 교역 현황
6. 한-베트남 투자 현황
7. 한국의 기체결 FTA 현황
8. 베트남의 기체결 FTA 현황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OPEN 공공누리 제1유형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 044-203-5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구분		주요 협상 내용
1차	'12.9.3~4 (서울)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2차	'13.5.22~24 (베트남 하노이)	▪ 우리측의 Text(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 13개 분야)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
※ VIP 방베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2013.9월)에서 "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3차	'13.10.16~18 (부산)	▪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지재권, SPS, 전자상거래, 경쟁)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
4차	'14.3.12~14 (베트남 호치민)	▪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
5차	'14.5.20~23 (서울)	▪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
6차	'14.7.28~8.1 (베트남 호치민)	▪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개시
7차	'14.9.29~10.2 (서울)	▪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하고, 협정문상 잔여 쟁점 합의 도출 노력 ▪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SPS 분과의 경우 협상 가속화
※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2014.10월)시 "한-베 FTA 연내 타결" 목표 재확인		
8차	'14.11.17~21 (베트남 다낭)	▪ 분과별 협상을 통해 협정문 관련 쟁점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를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
9차	'14.12.8~10 (서울)	▪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 타결 선언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 정상회담(2014.12월)에서 "한-베 FTA 실질타결 선언"		

참고2 한-베트남 FTA 타결 결과

1 개 요

□ 한-베트남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17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구분	챕터 명
상품관련	① 상품, ② 원산지(PSR 포함),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 ④ 무역구제, ⑤ SPS(위생·검역), ⑥ TBT(기술장벽)
서비스·투자	⑦ 서비스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⑧ 투자
규범·협력	⑨ 지재권, ⑩ 경쟁, ⑪ 투명성, ⑫ 전자상거래*, ⑬ 경제협력
총칙	⑭ 최초규정 및 정의, ⑮ 예외, ⑯ 분쟁해결, ⑰ 제도 및 최종 조항

* 베트남이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전자상거래)

2 상 품

□ **(상품)**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7%(+3%p) - 베트남 92.2%(+6%p)**로 **자유화수준 합의**

○ **(베트남측)** 베트남측은 이미 對韓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철폐하여 **92.2%의 자유화율** 달성

○ **(우리측)** 우리측은 이미 對베 수입의 **91.7%**(수입액 기준)를 양허, 1.3%는 즉시, 1.0%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철폐하여 **94.7%의 품목 개방**

□ **(베트남측 시장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 철도차량 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 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확보

○ 일-베 EPA 발효('09년)로 日 기업보다 베트남 시장내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하였으나, 일본보다 2.1%p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여 **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타이어,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이 가능해짐

□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생강(건조/기타) 등 민감품목은 **10년 철폐**

○ **새우**는 국내 민감성을 반영, 저율 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3 서비스·투자

□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

o **(양허)**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

※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건설 서비스 관련 베측 양허 개선

o **(금융 부속서)**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금융 서비스 위원회) 확보

o **(통신 부속서)** 우리 통신 사업자의 對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 이상의 규범 확보

o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위한 자연인의 일시입국·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투자)**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o 유보는 베측의 경험 부족을 감안, 한-베 FTA 발효 1년 후 완결하도록 하는 Built-in 조항을 도입하되,

o 베측이 향후 체결할 선진국과의 FTA(TPP, 베-EU) 수준을 반영하여 **최고 수준(the most advanced level)의 유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

4 규범·협력 등

1 원산지 & 통관

o **(원산지규정)**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업종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
농수산물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의 비율 제고 (예: 가당연유, 유당 등)
섬유·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예: 커튼, 모포 등)
기계, 전기·전자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예: 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 기어박스, 차축 등)

o **(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의 경우,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을 신규 선정**(HS 6단위 기준)

o **(원산지절차/통관)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의 편의 도모

- **(사전심사)** 상대국 수출자·생산자도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산지증명)**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기존 한-아세안 FTA 200불 이하)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2 무역구제

o **(양자세이프 가드)** 한베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o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

-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

o **(무역구제위원회)**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 신설

- 관련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

3 기술장벽 (TBT)

o **(주요내용)**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가 가능해짐

o **(평가)** 적합성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등 우리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WTO 플러스 수준의 포괄적 협정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

4 전자상거래

o **(주요 내용)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o **(평가)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하고, 양국간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다수 규정을 포함

5 지식재산권

o **(전반적 평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o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권리자(저자·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보장하고,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허락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

o **(상표권)**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이 확보되고 상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규범 형성

- 유명상표는 등록 전에도 보호하여 악의적인 상표선점을 방지하고, 상표 출원 과정을 공개하며, 제품·포장의 형상도 상표로 보호

o **(특허권)** 특허공지예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전에 발명이 공지됨으로써 거절된 출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함

o **(부정경쟁)** 타인의 상표, 명성, 품질 등과 오인하게 하는 상업 활동을 규제하고, 타인의 미등록 포장 디자인 사용을 금지

o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규정

6 경쟁

o **(주요내용)** ① **절차적 공정성·투명성·비차별·적시성**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 ② **국영기업·국가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③**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등 규정

o **(평가)**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 최종 의결서의 서면 송부, 법집행시 부당한 지연 금지 등 우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또한, **국영기업 및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우리기업과 베트남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

7 경제협력

o **(주요내용)**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농림수산분야)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규정 및 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 협력
(기타)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o **(평가)**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규정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의 기틀 마련**

8 투명성

o **(주요내용)** ① 협정 관련 조치(안)의 **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 보장**, ② 다른 쪽 당사국 요청시 해당 조치(안)에 대한 정보 제공, ③ 행정처분시 합리적인 통지 및 방어 기회 제공, ④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행정적 구제절차 설치 또는 유지

o **(평가)** 양국 법령·제도 하에서 가능한 범위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통하여,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 제공

9 분쟁해결

o **(주요내용)**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o **(평가)**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긴급시 단축 시한 별도 적용), **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보고서 제출의무, 패널설치일부터 150일(긴급시 7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참고3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구분	한국		베트남					
	품목수(개)		2012 대베수입액(불)		품목수(개)		2012 대한수입액(불)	
전체	12,232		5,717,642,288		9,558		15,508,115,790	
한-아세안 FTA*	11,168	91.3%	5,244,641,856	91.7%	8,256	86.4%	13,374,086,145	86.2%
무관세	4	0.0%	0		65	0.7%	179,932,363	1.2%
즉시철폐	87	0.7%	72,329,754	1.3%	-		-	
3년 철폐	216	1.8%	12,930,981	0.2%	14	0.1%	267,503,326	1.7%
5년 철폐	134	1.1%	43,140,259	0.8%	47	0.5%	19,069,941	0.1%
7년 철폐	7	0.1%	2,997,948	0.1%	30	0.3%	34,011,231	0.2%
10년 철폐	48	0.4%	40,195,248	0.7%	106	1.1%	405,553,016	2.6%
15년 철폐	3	0.0%	242,052	0.0%	3	0.0%	11,173,386	[illegible]1%
소계	**495**	**4.0%**	**171,836,242**	**3.0%**	**200**	**2.1%**	**737,310[illegible]00**	**4.8[illegible]**
총합계	**11,667**	**95.4%**	**5,416,478,098**	**94.7%**	**8,521**	**89.2%**	**14,291,32[illegible],40[illegible]**	**[illegible]2%**

* 한-아세안 FTA상 일반품목(normal track)의 경우, 우리측은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베트남은 품목수 기준 '15년에 90%, '16년 95%까지 관세철폐되어, '18년에 무관세 적용 예정

** 한-베 양측은 예외없이 모두 선형철폐(매년 일정 비율(1/N)씩 감소)

참고4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양허 단계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 등	4	즉시철폐(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면사, 모사, 남성바지/셔츠, 방모사, 방모직물, 브라우스, 생지, 섬유판, 양말, 신사복, 순면사, 언더셔츠, 여성정장, 잠옷, 장갑, 코트 및 자켓, 파티클보드, 합판 등	87	즉시철폐(유관세)	-	-
가자미, 갯장어, 건전지, 건조어란, 경유, 곡류가공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난류, 넙치, 발효유, 방어, 자전거, 자전거부품, 제트유, 피조개, 헤어린스, 필름 등	216	3년 철폐	14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편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가오리(냉동), 간장, 조제 감자, 고구마, 과일주스, 기타과실, 잼, 두부, 향미[illegible]제품, 조제소라, 조제오징어, 기타[illegible]류, 정밀화학원료, 기타주류, 기타[illegible]섬유, 복어, 먹장어, 당면, 쌀과자, 생선묵, 선박용 부품, 성게, 에틸렌초산비닐, 위스키, 인삼음료, 저밀도에틸렌, 조제문어, 피조개, 캐슈넛, 파티클보드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순면직물,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편직물,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혼방면직물 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 철폐	30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기타 돔,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섬유판, 베어링, 기타어류(냉동), 기타게(냉동), 기타해조류, 호도(탈각/신선·건조), 전갱이, 틸라피아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순면직물,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합성수지,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종자용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총합계	265	

참고5 한-베트남 교역 현황

□ 지난 '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는 56배 이상 성장**하여 '13년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2위 교역 대상국**

*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13, 억불): ①싱가포르(326.4), ②**베(282.6)** ③인니(247.4)

○ '13년 한국의 **對베 수출액은 210.9억불**(전년대비 32.2% 증가), **수입액은 71.8억불**(전년대비 25.5% 증가)으로, **139.1억불 흑자** 기록

*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

< 한-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10
수 출	금액	5,760	7,805	7,149	9,652	13,465	15,946	21,088	18,310
	증가율	46.7	35.5	-8.4	35.0	39.5	18.4	32.2	4.4
수 입	금액	1,392	2,037	2,370	3,331	5,084	5,719	7,175	6,647
	증가율	50.5	46.4	16.3	40.5	52.6	12.5	25.5	[illegible]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2	11,66[illegible]
총 교역액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illegible]	[illegible]

※ 13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수출 6위, 수입 15위 교역파트너('14.10월 기준)

□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관련 부품·소재** 위주, **수입 품목**은 자원 및 섬유·신발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위주

○ '14.10월 기준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철강판 등 5대 품목이 對베트남 수출의 **약 36.8%** 차지

○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의류, 신발, 목재류, 무선통신기기, 기타 섬유제품이며, 對베트남 수입의 **약 46.4%** 차지

<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전년 동기대비 %)

순위	수출('14.10월)			수입('14.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2,509	△1.2	의류	1,908	39.5
2	무선통신기기	1,684	25.7	신발	427	30.7
3	합성수지	985	4.5	무선통신기기	277	47.2
4	편직물	803	4.6	목재류	261	81.8
5	철강판	759	△6.1	기타섬유제품	209	16.6
	총계	**18,310**	**4.4**	**총계**	**6,647**	**12.1**

참고6 한-베트남 투자 현황

□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현재 3,983건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약 3,320여개 한국기업), **한국은 일본에 이은 제2위 투자국**

* 세계 對베트남 투자국 순위 : ① 일본, **② 한국,** ③ 싱가포르

○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이자 동시에 한국의 **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334억불 투자**(누계, '14.10월, 베트남 통계청)

* 한국의 투자순위 : ① 미국, ② 중국, ③ 홍콩, **④ 베트남**

□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 등으로 고도화

*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92~'00→'06~'10) : 경공업 36.4%p → 26.1%p
1차금속 및 전기·전자 등 30.4% → 36.8%

○ 對베 5대 투자분야는 **제조업**(76억불), **광업**(33불), **부동산업·임대업**(25억불), **건설업**(12억불), **금융·보험업**(7억불) 順 ('13년 누계(신고), 수은)

* 주요 투자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 등

□ 한편, **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총 106건, 총 14백만불('14.6월 누계(신고))로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

○ 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05년 1.1백만불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11년에 투자가 급증하여 5.0백만불을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

* 투자 추이(백만불): ('09) 1.0 → ('10) 0.8 → ('11) 5.0 → ('12) 1.7 → ('13) 2.1

< 한-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9	누계*
對베트남 투자	금액	2,780	1,913	964	2,147	1,511	914	1,455	933	**18,187**
	건수	839	826	643	763	723	739	1,014	595	**8,746**
對한국 투자	금액	0.5	0.4	1.0	0.8	5.0	1.7	2.1	0.8	**14.6**
	건수	7	9	13	15	15	14	7	3	**107**

* 對베트남 투자 : '68년-'14.9월 기준, 對韓 투자 : '97년-'14.9월 기준

참고7 한국의 기체결 FTA 현황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 의
既발효 (9건, 47개국)	칠레	발효('04.4.1)	'02.10 협상타결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3.2)	'04.11 협상타결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발효('06.9.1)	'05.7 협상타결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발효('07.6.1)	'07.6 상품 / '09.5 서비스 / '09.9 투자/'10.11 전체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13년 기준)
	인도	발효('10.1.1)	'09.8 서명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발효('11.7.1)	'10.10 서명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발효('11.8.1)	'11.3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3.15)	'07.6 협정서명 '10.12 추가협상타결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발효('13.5.1)	'12.8 기본·상품협정 서명 (서비스·투자 협상 진행중)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타결(7건, 6개국*) * 터키는 기본·상품협정 기발효	콜롬비아	서명('13.2.21)	'14.4.29 국회 비준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호주	서명('14.4.8)	'14.12.2 국회 비준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서명('14.9.22)	'14.12.2 국회 비준	북미 선진시장
	터키 (서비스·투자)	가서명('14.9.18)	정식서명 추진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중국	실질타결('14.11.10)	가서명 및 정식서명 추진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3년 기준)
	뉴질랜드	타결('14.11.15)	가서명 및 정식서명 추진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실질타결('14.12.10)	가서명 및 정식서명 추진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14.9월 기준)
협상 진행 (4건, 15개국)	인도네시아	7차 협상('14.2)	제8차 협상 일정 미정	ASEAN 회원국중 우리 최대 교역국('13년 기준)
	한중일 (3자)	6차 협상('14.11)	제7차 협상 개최 예정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3]	6차 협상('14.12)	제7차 협상 개최 예정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한-아세안 업그레이드	4차례 협상 진행 (8차~10차 한-아세안 이행위 및 특별회의)	제11차 이행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추가자유화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8개국)	멕시코	2차 협상('08.6)	제3차 협상 일정 미정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4]	3차 협상('09.7)	제4차 협상 일정 미정	자원부국,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13년 기준)
	일본	3차 과장급협의 ('12.6)	제4차 과장급 협의 일정 미정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13년 기준)

1) EFTA(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4)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UAE·쿠웨이트·오만·카타르·바레인

참고8 베트남의 기체결 FTA 현황

단계	명칭	추진 현황
既발효 (8건)	ASEAN[1] FTA	'92.1월 서명, '93.1월 발효
	ASEAN-중국 FTA	(상품) '04.11월 서명, '05.7월 발효 (서비스) '07.1월 서명, '07.7월 발효 (투자) '09.8월 서명, '10.1월 발효
	ASEAN-한국 FTA	(상품) '06.8월 서명, '07.6월 발효 (서비스) '07.11월 서명, '09.5월 발효 (투자) '09.6월 서명, '09.9월 발효
	ASEAN-일본 CEP	'08.3월 서명, '08.12월 발효
	ASEAN-인도 CEPA	(상품) '09.8월 서명, '10.1월 발효
	ASEAN-호주-뉴질랜드 FTA	'09.2월 서명, '10.1월 발효
	베트남-일본 EPA	'08.12월 서명, '09.10월 발효
	베트남-칠레 FTA	'11.11월 서명, '14.1월 발효 (서비스·투자 제외)
실질 타결	베트남-한국 FTA	'14.12.10월 실질타결
협상중 (5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10.11월 TPP 정식 가입 후, 현재 제19차 협상('13.8)까지 진행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4])	'12.11월 협상개시 후, 현재 제5차 협상('14.6)까지 진행
	베트남-EU FTA	'12.10월 협상개시 후, 현재 제9차 협상('14.9)까지 진행
	베트남-EFTA[3] FTA	'12.7월 협상개시 후, 현재 제10차 협상('14.11)까지 진행
	베트남-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	'13.3월 협상개시 후, 현재 제7차 협상('14.9)까지 진행

1)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2) EFTA(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3)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